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9.(화)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원)

#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김동원)

## 1. 검토안건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2. 11. 15.
- 회부일 : 2022. 11. 18.(의안번호 : 22-135)

## 3. 제출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마포복지목욕탕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기간 : 2023. 5. 1. ~ 2025. 4. 30.(2년)
-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4) 위탁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등에게 건강과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외 다양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업무 효율성 제고

#### 5)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마포복지목욕탕
- 위치: 마포구 월드컵로 205(성산동) SH공사 성산아파트 임대상가 24호
- 시설규모: 면적 455.85㎡(전용 299.04㎡, 공용 156.82㎡)
- 임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무상 임대사용(2009.1.6.~현재)

#### 6) 소요예산 : 총258,084천원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산출내역	비고
<b>계</b>	<b>258,084</b>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258,084	- 운영비 118,854 - 운영비 108,730 - 시설비 30,500	구비

\* 2023년 최저임금 및 시설 소요예산 반영

#### 다. 추진일정

- '22. 12월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수립
- '23. 1월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및 수탁기관 선정
- '23. 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3. 5월 : 위탁운영 개시

## 5. 관계법령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2조, 제4조 및 제16조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2. 11. 1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135호로 제출되어, 2022. 11. 18.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사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마포복지목욕탕 운영관리 주체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법인 운영사무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과의 위탁기간이 '23. 4. 30.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복지목욕탕 시설 운영, 인력운영 관리일체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조례 규정에 따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 위탁 운영체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 복지목욕탕 이용자 및 이용현황

- 2020. 2. 3.~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운영 중단
- 2021.11.25.~: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운영 재개

연도	계(명)	일반 대상	할인대상							
			소 계	장애인	노인	수급자	유공자	한부모	보호자	미취학
2021	435	13	422	33	358	28	0	0	3	0
2020	4,380	143	4,237	81	4,042	92	0	0	20	2
2019	39,765	1,629	38,136	1,085	35,762	997	12	7	239	29

연도	운영일수(일)	일평균이용자(명)
2021	32	13.5
2020	24	182.5
2019	270	147

##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 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임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05(성산동) SH공사 성산아파트 임대상가 제24호에 설치한다. <개정 2014.10.16>
- ② 목욕탕 명칭은 "마포복지목욕탕"으로 한다.

### 제4조(운영)

- ① 목욕탕 운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 ② 구청장은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제16조(위탁계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6>